

의안번호	2215602
의 퇴 인	손술 의원
회 답 일	2026. 2. 12.
추 계 번호	25C7139

돌봄정책기본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는 경우
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7억 5,000만원(연
평균 3억 5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43조)	95	-	-	-	-	95	19
광역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· 시행(안 제44조)	306	306	306	306	306	1,530	306
돌봄 실태조사 실시(안 제46조)	40	-	-	40	-	80	16
돌봄정책위원회 운영(안 제47조)	9	9	9	9	9	45	9
추가재정소요	450	315	315	355	315	1,750	350

주: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돌봄서비스 제공 의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짐	의무규정
2	제10조(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의 지속성, 안정성,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제11조(각 돌봄서비스 사이의 격차 축소 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상별로 분절된 돌봄서비스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제12조(생애주기 등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 및 사회·경제적 변화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개발·제공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제13조(지역 돌봄 통합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과 사회서 비스가 연계·지원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	의무규정
6	제14조(지원주택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지원주택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7	제15조(돌봄서비스의 무상 제공 원칙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의 무상 제공을 위하여 예산과 기금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	(제1항) 의무규정 (제2항) 재량규정
8	제17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제공 기관 설치·운영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정 수의 돌봄제공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9	제18조(돌봄제공기관 직접운영 원칙 등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하여야 함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 기관의 직접운영 전환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(제3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 이후 종사자의 계약 지속을 보장하여야 함 (제4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 변경 시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하여야 함	의무규정
10	제19조(민간 돌봄제공기관 인·허가 및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돌봄제공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11	제21조(인력 및 시설 기준)	국가는 돌봄제공기관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함	의무규정
12	제24조(돌봄제공기관에 대한 국공립 전환 또는 폐쇄 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위반 시 국공립 전환 또는 폐쇄 등 조치를 정하여야 함	의무규정
13	제25조(돌봄제공기관 종사자 인권교육)	돌봄제공기관은 돌봄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14	제26조(돌봄관리기관 설치·운영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관리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·도사회서비스원 또는 시·군·구 사회서비스원을 돌봄관리기관으로 지정하거나, 관리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	(제1항) 의무규정 (제2항) 재량규정
15	제29조(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평등 대우 등)	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돌봄노동자가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(제3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돌봄노동자가 가족 등을 돌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	의무규정
16	제32조(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비용의 예산 반영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의 직정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, 근로시간 면제 등 노동3권 보장, 안전 보호 및 사회보험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및 기금의 편성에 반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17	제33조(돌봄노동자의 인정체계 확립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가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력 및 전문능력 인정체계를 수립하고, 돌봄노동자에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8	제34조(돌봄노동자의 경력 인정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의 경력 및 전문능력에 따른 돌봄의 질 향상을 반영한 합리적인 급여 제도를 마련하고, 돌봄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함	의무규정
19	제35조(돌봄노동자 인권보호 조치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가 이용자등의 괴롭힘으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등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(제3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등의 괴롭힘에 의한 돌봄노동자의 정신적·신체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	의무규정
20	제36조(돌봄자의 성별 편중 완화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가 여성에 편중된 역사적·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각 성이 평등하게 돌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	의무규정
21	제37조(돌봄자의 균형 있는 삶 보장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가 일·돌봄·휴식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	의무규정
23	제38조(가족등 돌봄 필요시 휴직 등) 제2항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등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돌봄에 따른 휴직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	의무규정
24	제39조(돌봄자에 대한 차별 해소) 제2항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가 직업활동에서 받는 돌봄 차별 및 불이익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	의무규정
25	제40조(돌봄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 보장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의 돌봄이 직업활동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확산시켜야 함	의무규정
26	제41조(돌봄자에 대한 사회보장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에게 발생하는 재해,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가입을 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27	제42조(돌봄 청소년·청년에 대한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청소년·청년이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각 영역에서 고른 기회를 누리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28	제43조(돌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제1항	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돌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29	제44조(광역돌봄정책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)	(제1항) 시·도지사는 매년 광역돌봄정책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(제4항) 국가는 시·도지사가 광역돌봄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(제1항) 의무규정 (제4항) 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0	제45조(기초돌봄정책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)	(제1항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기초돌봄정책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31	제46조(실태조사)	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32	제47조(돌봄정책위원회 등)	보건복지부에 돌봄정책위원회를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광역돌봄위원회를, 시·군·구에 기초돌봄정책위원회 등을 둠	의무규정
33	제48조(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안정화 등) 제1항	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안정화 등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 1. 범위·분류·평가기준 마련 2. 현황조사 실시 3. 추진체계 개선 4. 평가 및 제도개선 의견 제시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돌봄서비스 제공 의무)	×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2	제10조(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)	×	
3	제11조(각 돌봄서비스 사이의 격차 축소 등)	×	
4	제12조(생애주기 등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)	×	
5	제13조(지역 돌봄 통합 지원)	×	
6	제14조(지원주택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)	×	
7	제15조(돌봄서비스의 무상 제공 원칙)	×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8	제17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제공기관 설치·운영)	×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수의 돌봄제공기관 설치·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민간위탁 기관의 직접운영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, 일부 민간 돌봄제공기관에는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설치비, 인건비, 운영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설치하거나 국공립 시설로 전환할 시설의 수와 규모, 민간 돌봄제공기관에 추가로 지원할 비용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9	제18조(돌봄제공기관 직접운영 원칙 등)	×	
10	제19조(민간 돌봄제공기관 인·허가 및 지원)	×	
11	제21조(인력 및 시설 기준)	×	
12	제24조(돌봄제공기관에 대한 국공립 전환 또는 폐쇄 등)	×	
13	제25조(돌봄제공기관 종사자 인권교육)	×	
14	제26조(돌봄관리기관 설치·운영)	×	
15	제29조(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평등대우 등)	×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노동자(외국인 포함)의 노동 3권 보장, 안전보호, 사회보험 보장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실시할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움
16	제32조(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비용의 예산 반영)	×	
17	제33조(돌봄노동자의 인정체계 확립)	×	
18	제34조(돌봄노동자의 경력 인정)	×	
19	제35조(돌봄노동자 인권보호 조치)	×	
20	제36조(돌봄자의 성별 편중 완화)	×	
21	제37조(돌봄자의 균형 있는 삶 보장)	×	
23	제38조(가족등 돌봄 필요시 휴직 등) 제2항	×	
24	제39조(돌봄자에 대한 차별 해소) 제2항	×	
25	제40조(돌봄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 보장)	×	
26	제41조(돌봄자에 대한 사회보장)	×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27	제42조(돌봄 청소년·청년에 대한 지원)	×	○ 현재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 시행에 따라 확대되거나 신규 도입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음 -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은 4개 지역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하여 선도모델을 마련 중인 사업으로, 자조모임 운영·관리 지원, 자기돌봄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,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30억 7,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(국고보조율 70%)
28	제43조(돌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제1항	○	○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29	제44조(광역돌봄정책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)	○	○ 경상북도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30	제45조(기초돌봄정책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)	×	○ 기존 예산 내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
31	제46조(실태조사)	○	○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32	제47조(돌봄정책위원회 등)	△	○ (돌봄정책위원회)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○ (광역돌봄위원회·기초돌봄위원회)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위원의 수 및 회의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
33	제48조(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안정화 등) 제1항	×	○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현황조사와 추진체계 개선을 추가로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 -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조사 및 관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서는 안 제43조·제44조·제46조·제47조의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-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(위 ‘재정수반별 추계 여부’의 [표] 참고)

- 제정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돌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8조)

-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5년 주기로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보건복지부가 2021년 수행한 “돌봄안전망 혁신·통합의 비전과 전략 연구”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하여 2021년 “돌봄안전망 혁신·통합의 비전과 전략 연구” 용역(9,250만원 소요)을 실시함
 - 본 추계에서는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“돌봄안전망 혁신·통합의 비전과 전략 연구” 용역 사례와 유사한 9,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추계결과, 5년 주기로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9,500만원으로 추계

[표 2]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 분	(단위: 백만원)						연평균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
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43조)	95	-	-	-	-	95	1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광역 돌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4조)

- 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가 매년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경상북도가 2022년 수행한 “경북 농촌 돌봄시설 현황 및 운영모델 개선 방안 연구”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- 경상북도는 경북 농어촌 지역 특성에 따른 돌봄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하여 2022년 “경북 농촌 돌봄시설 현황 및 운영모델 개선방안 연구” 용역(1,800만원 소요)을 실시함
- 본 추계에서는 17개 시·도별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경상북도의 연구 용역 사례와 유사한 1,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추계기간 시·도의 수는 현행과 같이 17개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□ 추계결과, 시·도지사가 매년 광역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5억 3,000만원으로 추계

[표 3] 광역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							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광역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4조)	306	306	306	306	306	1,530	30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돌봄이용자 및 돌봄노동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(안 제46조)

□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돌봄이용자 및 돌봄노동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“사회적 돌봄 노동의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”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
-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요양보호사, 아이돌보미, 보육교사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0년 “사회적 돌봄 노동의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” 용역(4,069만원 소요)을 실시함
- 본 추계에서는 돌봄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구 용역 사례와 유사한 4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
- 추계결과, 3년 주기로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8,000만원으로 추계

[표 4] 돌봄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돌봄 실태조사 실시 (안 제46조)	40	-	-	40	-	80	1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돌봄정책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47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돌봄정책위원회를 두는 경우 회의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신규 위촉위원에 대한 회의수당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유사사례인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사회보장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 각 3회의 회의(본회의)를 개최하였고, 대면회의 시 회당 20만원, 서면회의 시 회당 10만원을 지급¹⁾
 - 2023년 대면회의 1회, 서면회의 2회, 2024년은 서면회의 3회 개최
 - 본 추계서는 돌봄정책위원회의 위촉 위원 수 제정안에 명시된 전체 위원 수 상한(30명)의 50%인 15명인 것으로 가정하고, 매년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,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1) 행정안전부위 행정기관위원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, 사회보장위원회는 2025년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음

[표 5] 돌봄정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위원 수	15	15	15	15	15	—	—
회의 횟수	3	3	3	3	3	—	—
회의수당 단가	0.2	0.2	0.2	0.2	0.2	—	—
추가재정소요	9	9	9	9	9	45	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